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25
----------	-----

2023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9일 윤영희 의원(찬성 45명)
2.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3. 상정일자 : 제318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4월 26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윤영희 의원)

1. 제안이유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3. 4. 6. ~ 2023. 4. 10.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개정안의 취지

- 서울시는 최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대책으로 “난임부부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¹⁾, 현행 조례에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 이에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²⁾.

2 개정안의 주요 내용별 검토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함(안 제 7조제1항제1호)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난임극복을 위한 시장의 지원사업의 범위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1) 자료: 임수민, 2023.03.08., “오세훈 저출산대책…”난임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 소득기준 폐지·냉동 난자 시술비 지원 등 2123억 투입”,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5218

2) 자료: 온라인뉴스팀, 2023.03.30., “윤영희 서울시의원 “서울시 난임 시술비 지원 ‘법적 발판’ 마련””, 서울신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50032?sid=102>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p> <p>1. <u>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2) 검토의견

- (국내 난임부부 지원정책 확대 경과)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2005년 5월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³⁾를 근거로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인구대응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작되었음⁴⁾.
 - 2006년부터 정부는 자녀를 갖기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고비용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했으며,
 - 당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횟수는 2회, 선정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였고, 1회당 150만원(기초수급자

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4)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25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였음⁵⁾).

- 2012년 5월에는 「모자보건법」을 개정⁶⁾하여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동시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였음.
- 그 후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시술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 적용⁷⁾으로 인해 대다수 비급여 시술수가를 급여화 전환하였고⁸⁾, 2019년부터는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기존 만44세) 폐지⁹⁾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하였음¹⁰⁾.
-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지원대상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며, 자세한 시술비 지급 기준¹¹⁾은 아래와 같음.

5)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6) 「모자보건법」 [시행 2012. 8. 24.] [법률 제11441호, 2012. 5.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상 ‘불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임신이 되지 아니하지만 치료를 통해 임신이 가능한 상태’를 뜻하는 ‘난임’으로 변경하여 난임가정에 희망을 주고 난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임신중절 등을 예방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모성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임.

7)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지만,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함.

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9) 만 45세 이상의 경우는 본인이 50%를 부담하도록 함.

10) 「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서 일컫는 ‘난임’에 대한 정의에서 부부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고 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됨.

〈표-1〉 2023년 기준 난임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 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자료: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p109.

- 이처럼 우리나라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6년 도입 이후,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음<붙임1 참고>12).
-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평가) 2006년부터 시작된 ‘난임 부부 지원정책’은 지난 16년간 지원 대상자와 사업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으며, 그 결과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13).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험관 아기나 인공수정 등 정부의 난임 의료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기는 2018년 8,973명 → 2019년 2만 6,362명 → 2020년에는 2만 8,699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신생아(27만 2,300명)의 10.5%를 차

11) (시술비 지급 기준) 시술기관에서는 시술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을 선택하게 하여 청구하도록 함. ① (일부·전부분인부담금)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지급 가능, ② (비급여)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20만원까지 지급 가능, ③ (지원금 합계) 상기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및 비급여 금액의 합산액은 지급상한액을 넘을 수 없음

12)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즉, 신생아 10명 중 1명 정도가 난임 시술로 태어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고함¹⁴⁾.

- 서울시 역시, 전체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난임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표-2 참고>,

정부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¹⁵⁾을 완화하고, 임신 성공률¹⁶⁾을 높여줌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표-2> 서울시 출생아수 및 난임시술 출생아수

- ('22년 서울시 합계출산율 전국최저) 0.59명 vs 전국 합계출산율 0.78명
- (서울시 출생아수 지속감소) '18년 58,074명 → '20년 47,445명
- (서울시 난임시술 출생아수 증가) '18년 2,142명 → '20년 2,578명
- (서울시 남녀 난임진료인원 증가) '19년 52,617명 → '20년 53,207명
- (서울시 소재 요양기관 난임시술 진료금액 증가) '18년 66,230,149천원 → '20년 86,023,645천원

자료: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2022),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계획 등

- 이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 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14)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15) 난임 시술을 1회 이상 받은 자(653명)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 기준(검사비, 시술비, 약제비, 주사제, 배아동결비 등 포함)으로 난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총 의료비는 지금까지 1,000만원 이상이 전체의 35.9%, 1억 이상도 1.2%도 있음(기타 100만원 미만 9.0%, 100~300만원 미만 19.9%, 300~500만원 미만 16.8%, 500~1,000만원 미만 18.4%).

※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16) `18~22년 서울시 난임시술비 지원건수 및 임신성공률 현황

- 2018년 지원건 1,639, 임신건 512, 임신성공률 31.2%
- 2019년 지원건 12,859, 임신건 3,654, 임신성공률 28.4%
- 2020년 지원건 17,722, 임신건 5,135, 임신성공률 29.0%
- 2021년 지원건 20,094, 임신건 5,719, 임신성공률 28.5%
- 2022년 지원건 20,288, 임신건 5,522, 임신성공률 27.2%

※ 임신성공률(%) = 임신성공건수/체외·인공수정 난임시술 총건수*100

※ 출처: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3), PHIS(보건의료정보시스템) 자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임신 단계까지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고려한다면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지원정책”이라는 평가도 있음¹⁷⁾.

- (지방자치단체의 난임 지원 관련 정책 동향) 한편, 이러한 중앙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재정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¹⁸⁾.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난임부부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중앙정부의 지원 시술 횟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을 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이며,

- 이외에도 한약이나 한약요법을 지원하거나 일부 지자체는 난임 치료시술을 위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음<붙임2 참고>.

- 서울시 역시, 지난 2020년부터 건강보험 지원 횟수가 소진된 서울시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를 대상(소득기준 없음)으로 신선배아 시술비 추가 지원(1회 최대 180만원)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난임부부 대상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협약비 지원 사업

17)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등을 시행하고 있음¹⁹⁾).

- 나아가, 지난달 8일 서울시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난임 시술 간 칸막이 폐지 등을 포함한 난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²⁰⁾.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에서도 “결혼 연령이 늦어져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아지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되는 난임 시술비를 모든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²¹⁾ 밝힌 만큼, 향후 시술비 지원 상황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현행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보여짐.
- 또한, 현재 「모자보건법」 제11조²²⁾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19) 2023년 시민건강국 난임부부 지원관련 예산

- 난임부부 지원(전환사업) : (시비) 11,610,235천원 / (분담비율) 시비 65%, 구비 35%
- 난임부부 지원(자체사업) : (시비 100%) 620,000천원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 (시비 100%) 300,000천원
- (신규)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설치운영 : (시비) 119,000천원

20) 자료: 임수민, 2023.03.08., “오세훈 저출산대책...”난임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서울시, 소득기준 폐지·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등 2123억 투입”, 데일리메디,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95218

21) 자료: 박윤아, 2023.03.28., “5년간 신혼부부에 43만가구 공급...난임시술 소득 상관없이 지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N7B74XNI>

22)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는 난임²³⁾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지원에는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은 매우 바람직함.

3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의 난임 지원 확대 계획에 발맞추어 현행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모자보건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3)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0. <중략>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말한다.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임.

- 또한, 저출생 시대 국가 차원의 인구대응책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도입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정책’에 관한 현황을 종합해보면, ①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기본적으로 지방의 재원으로 지방이 수행하는 사업이 되었다는 점, ② 한해 출생아 10명 중 1명이 난임시술로 태어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③ 이에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정책’이 비용 대비 효율이 가장 높은 저출산 지원정책이라 평가받고 있다는 점, ④ 아울러,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난임부부 지원정책’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조례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초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본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1 난임부부 지원 사업 확대 경과

구분			'06	'09	'10	'11	'12	'13	'14	'15	'16	'16.9.1.	'17	'17.10.	'18	'19	'19.7
지원횟수	체외	신선	2회	3회	4회			3회 *동결 미발생시 4회			3회 *동결 미발생시 4회		4회	4회	7회		
		동결	-			-			3회			-		3회	5회		
	인공	-			-			3회			-		3회	5회			
지원대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폐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지원항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일부본인부담금				
최대지원금액	체외	신선	일반	150만원		180만원		180만원	190만원	*소득 구분 기준		50만원	50만원	50만원	('19년 대비 확대된 시술 차수 및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0만원)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40만원	130%이하 240만원						
						100%~150% 190만원	130%~200% 190만원										
						* 4회차 100만원	* 4회차 180만원			150%초과 100만원	200%초과 100만원						
		기초급	255만원	270만원	300만원		300만원										
		동결							의료급여수급권자 100만원								
							60만원		100%이하 80만원	130%이하 80만원							
									100%~150% 60만원	130%~200% 60만원							
										150%초과 30만원	200%초과 30만원						
		인공		-		50만원				150%이하 50만원	200%이하 50만원						
										150%초과 20만원	200%초과 20만원						
비고			-										'17.10.간호보험 적용 및 차수 연동		연령 제한(만44세 이하) 폐지		

* 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21. 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의안 번호 제7741호, 의안번호 제8305호, 의안번호 제8570호, 의안번호 제8700호, 의안번호 제8737호)

붙임2 지방자치단체 난임부부 지원 사업

지자 치구	제목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강원도 본청 ⁷⁾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	난임 부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부부 당 최대 15만원 지원
강원도 양구군 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부부	관내 거주 시술비지원 사업 대상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1인당 300만원 이내 지원
강원도 춘천시 ⁹⁾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 여성	관내 거주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3개월간 한약 지원 침, 뜸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
경기도 ¹⁰⁾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관내 거주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3개월간 한약 지원
경기도 광주시 ¹¹⁾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사업	난임 부부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 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	정부 안과 동일
경기도 성남시 ¹²⁾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관내 거주 한방 난임 지원 사업 참여기간 동안 보조 생색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한 자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3개월간 한약 지원
경기도 수원시 ¹³⁾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1년 이상 관내 거주 여성: 만 44세 이하 남성: 정액 검사이상 소견 남성 - 제외: 자궁 이상여 성, 무정자증/정관 폐색증 남성	한약 지원	치료비 180만원
경상남도 ¹⁴⁾	난임 시술비 확대지원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 득 180% 초과자에게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폐지 최대 17회까지, 지원 금액은 시술 종류와 지 원 차수, 지원 연령별로 차등(20~110만원까지 지원

지자 치구	제목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경상남도 진주시 ¹⁵⁾	난임부부 기초 검진비 및 격려금 지원	난임 부부	관내 거주	난임부부 격려금	2회의 시술이 비임신시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¹⁶⁾	난임부부 지원 확대	난임 부부	관내 거주	난임진단 검사비용 지원 및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난임 관련 기초 검진비 1회당 1인 30만원 이내 지원 정부지원난임시술지원 대상자 시술회당 100 만원이내, 비대상자의 경우 회당 50만원이내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¹⁷⁾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관내 거주	교통비 지원	난임시술 관련 교통비 1차 수당 5만원(최대 5 회) 지원
광주광역시 ¹⁸⁾	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난임 여성	관내 거주 난임시술 지원 희수 초과자	지원 횟수 종료자 대상 추가 시술비 지원	난임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최대 20~150만원 지원(시술 종류와 소득별로 시술 금액 상한 차등지원)
김천시 ¹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난임 여성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관내 거주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본인부담 및 비급여 비용 지원(각 시술 당 최대 50만원) 신선배아 4회, 동결배 아 3회, 인공수정 3회 정부지원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 시술과 무관 한 항목, 영양제 등의 항목은 제외
대구광역시 ²⁰⁾	한방난임 부부지원 사업	난임 부부	관내 거주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4개월간 집중 치료(약 120일분의 한약과 주 1회의 침구치료)

지차 차구	제목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대전광역시 서구 ²¹⁾	(임신 출산)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난임 여성	관내 거주 법적 혼인상태에 있음 만 44세 이하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한약(3개월), 침구 치료 (6개월) 임상검사(사전, 사후): 혈액 검사, 임신반응검사 한방진단검사(사전, 사후): 스트레스검사, 사상체질 설문 조사 등
부산광역시 ²²⁾	난임지원 바우처 사업	난임 부부	관내 거주	기준중위소 득 180% 초과자	체외 및 인공수정 시술 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90% 지원
	한방난임 지원 사업	난임 여성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한의원에서 4개월간 한약 및 뜸 치료 시행
서울시 ²³⁾	서울시건강 가정지원 센터X 중앙난임· 우울증상담 센터 업무협약	난임 부부			난임부부에게 맞춤형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 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난임시술 지원 횟수 초과 부부	지원 횟수 종료자 대상 추가 시술비 지원	
	서울시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자연임신을 희망 난임 사유가 "원인불명" 인 경우 사실혼 포함 - 국가 및 서울시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서울시 남녀임신준 비 사업				엽산제 제공 남녀 임신 준비 설문 작성 및 임신준비검사 (혈액, 소변 검사 등)

지자 치구	제목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순천시 ⁽²⁴⁾	순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 여성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 지원	본인부담금부분지원 (회당 최대 50만원) - 신선배아 7회, 동결 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 건강보험 난임시술 종료자에게 시술비 추가 지원(신선배아 최대 250만원, 동 결배아 최대 10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5만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²⁵⁾	임산부,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난임 여성	6개월 이상 관내 거주	교통비 지원	1회 5만원 최대 10회 교통비 지원
익산시 ⁽²⁶⁾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난임 부부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한약복용(4개월), 한방 요법(침구 및 약침치료 등)지원 - 여성 4개월, 남성 2개월
인천광역시 ²⁷⁾	한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난임 여성	관내 거주	한약 지원	3개월간 한약재 지원 (1인당 120만원 범위 내)
인천광역시 연수구 ⁽²⁸⁾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	난임 여성	3개월 이상 관내 거주 법적 혼인상태에 있음 만 44세 이하 난임 사유가 "원인불명" 인 경우	한약 및 한방요법 지원	한방난임 치료비 1인당 100만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전라남도 광양시 ⁽²⁹⁾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지원	난임 부부	관내 거주 난임시술 지원 횟수 초과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신선배아 또는 동결배아 난임 시술 1회 지원 (200만원 한도)

지자 차구	제목	대상자	세부 기준	지원 내용	세부 내용
전라남도 영광군 ³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추가지원	난임 여성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시술시작일 기준 관내 거주여성 만 44세 이하 여성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 담금지원 - 제외수정: 신선배아 4회한(회당70만원 범위 내) - 제외수정: 동결배아 3회한(회당30만원 범위 내) - 인공수정 3회한(회당 20만원 범위 내)
전라남도 함평군 ³¹⁾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	난임 여성	1년 이상 관내 거주 난임시술 지원 횟수 초과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추가지원	국민건강보험 적용 비지 원 횟수 이내로 지원,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선배아 건강보험 횟수 종료된 대상자 시술비 1회당 최대 200만원, 3회 까지 지원
전라남도 화순군 ³²⁾	화순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난임 부부	관내 거주	지원 횟수 종료자 대상 추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 자치도 ³³⁾	한방 난임치료 지원	난임 부부 (사실혼 포함)	관내 거주 만 44세 이하 여성 한의학적 치료가 가 능한 경우(구조적 병 변 제외) 자연임신을 원하는 1 년 이상 원인불명의 난임진단	한약 지원	한의학 난임 협약비 3개월 지원 인당 치료비 150만원 부부/단독 치료 모두 가능 국가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과 동시 지원 불가 ※ 국가난임부부시술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지원 가능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25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3월 29일

발 의 자: 운영희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성연, 박영한, 박춘선, 박칠성, 박환희,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유정희, 윤기섭,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소라,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장태용, 최민규, 최진혁, 허·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
- 이에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 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다. 기타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u><신 설></u></p> <p>1. (생 략)</p> <p>2. (생 략)</p> <p>3. (생 략)</p> <p>② (생 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 ----- -----.</p> <p>1. <u>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u></p> <p>2.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